# 「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03월 10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 1. 제안이유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군수의 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(안 제4조)
- 다.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(안 제5조)
- 라.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6~7조)

#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
- O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  -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
  -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우수자등에 대한 표창
  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.

#### O 본 조례안은

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 등 효행교육 실시를 군수의 임무로 하고, 그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 수행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,

O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제5조

"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"을 독려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하겠습니다.

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, 원주시, 영월군이 있으며,
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